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82 발의연월일: 2021. 11. 2.

발 의 자:임오경·오영환·이형석

장철민 · 한준호 · 이병훈

이상헌 · 이수진 · 전용기

서영교・유정주・박 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,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, 관할 지자체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·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등록 체육시설업자(골프장업, 스키장업, 자동차경주장업)의 휴· 폐업 통보 의무는 없으며, 체육시설업자가 휴·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 아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.

또한, 체육시설업자가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, 동일 영업장 대한 인·허가 제한 등 신규 영업자 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처분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·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,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 공유로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9 조, 제40조 등).

법률 제 호
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1항 중 "제20조제1항"을 "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"으로,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을 "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-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육시설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2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

제29조(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) 제29조(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)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 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 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
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!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 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 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하다.

개 정 안

①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

----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-----

- ②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「부 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-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2 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육시설업자의

제4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40조(과태료) ①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6. (생략) <신 설>

② (생 략)

폐업	여부에	대한	정보틭	를 제공
하도	록 요청형	할 수 9	있다. 여	이 경우
요청-	을 받은	관할	세무	-서장은
「전기	자정부법	」]]36조기	제1항에
따라	관광사	업자의	폐업	여부에
대한	정보를	제공하	-여야	<u>한다.</u>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제2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 는 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
- ② (현행과 같음)